민사집행법에 대한 일반적리해

조용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법률학부문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가건설리론과 법리론을 더욱 완성하며 경제와 관련한 법들을 비롯한 법해설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에 법질서와 준법기품을 철저히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경제와 관련한 법들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고 경제사업에 적극 구현하는것은 경제관리질서를 세우고 생산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은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 투쟁의 성과는 당정책실현의 위력한 무기이며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수단인 법의 적극적인 작용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민사집행법은 공민은 물론 경제기관, 기업소와 단체들사이에 경제거래과정에 제기되는 재산분쟁문제들을 소송이나 중재절차로 해결하고 그의 실질적인 법적담보를 위한 민사집행활동을 규제한 법규범이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고 사회주의경제활동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적극 발휘하게 할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민사집행법의 규제대상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는것이다.

모든 법들은 자기의 고유한 규제대상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다른 법들과 구별되다.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제정한 민사집행기관이 민사집행권을 행사하는 활동에 대한 규범이며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제하고있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민사집행기관이 민사집행권을 행사하는것은 바로 민사집행법규에 근거하여 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문이나 재결문에 따라 강제적인 집행조치를 취하여 자기에게 지워진 의무리행을 거절하는 채무자가 의무를 리행하도록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여주는 활동이다.

민사집행기관이 민사집행권을 행사하는것으로 하여 일어나는 법률관계는 바로 민사집행활동속에서 일어나는 민사집행기관과 집행당사자, 그밖의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권리의무관계이다. 따라서 민사집행활동과 민사집행법률관계는 다같이 민사집행법의 규제대상으로 된다.

민사집행법은 국가의 이름으로 제정하고 인정하는 행위규범이며 국가적인 의사를 담고있다.

민사집행법은 국가적인 의사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보편성과 강제성을 가지며 이것은 다른 사회규범과 명백히 구별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활동과 민사집행법률관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범적문건

으로 규제하고있는 《민사집행법》(법전)의 의미와 함께 그와 련관되여있는 법률과 규범 그리고 그 해석 등 민사집행의 규정을 포함하고있는 민사집행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민사집행법은 독립적인 민사집행법전이 제정되여있지 않기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집행법을 가리킨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공화국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에 대하여 옳은 파악을 하는것이다.

그것은 법규범들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서로 련관되여있으면서도 규제대상과 규제 방법에 따라 일정하게 구분되기때문이다.

사람들의 사회생활, 사회적활동은 일련의 공통성에 따라 일정하게 구분되는데 맞게 법규범들도 어떤 사회관계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따라 그리고 규제방법 상의 특성에 따라서도 일정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법규범들은 내적련관성에 따라 법체계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른 법 규범들의 집단들과 련계를 맺게 된다.

민사집행법은 우선 국가적인 법체계속에서의 차지하는 지위로부터 본다면 독자적인 부문법이다.

법학기초리론에 의하면 독자적인 부문법으로 되는 기준에는 두가지가 있다. 독자적인 법부문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부문의 법규범들이 규제하는 사회관계가 다른 부문의 사 회관계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 해당 부문의 사회관계에 대하여 독자적 으로 규제하는 법규범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이 기준에 따라보면 완전히 독자적인 부문법으로 된다. 그것은 민사집행법이 자기의 독자적인 규제대상이 있는것과 관련된다.

민사집행법이 규제하는것은 민사집행기관과 집행당사자, 기타 집행참가자사이 그리고 그들호상간 민사집행절차속에서 형성되는 특이한 사회관계이며 이런 사회관계는 다른 부 문법이 규제하는 사회관계와 명확한 구별이 존재한다.

민사집행법에는 자기의 독특한 규제방법이 있다.

민사집행기관은 민사집행권을 행사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 수매(외국 집행법에는 강매, 수매, 변매) 등을 실시하는것을 통하여 채무자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 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한다.

이런 규제방법은 민사집행법이 특수하게 가지게 되는것이며 기타 어떤 부문법도 민 사집행법을 대신할수는 없다.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독자적인 부문법으로 된다.

민사집행법은 또한 일반법이면서 수속법에 속한다.

법규범은 그 적용범위의 크기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가르며 그것이 규제하게 되는 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수속법으로 구분된다. 일반법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일반사항 에 적용되는 법규범이며 특별법은 비교적 좁은 특수적사항에 적용되는 법규범이다.

민사집행법은 우리 국가의 령역내에 있는 민사집행기관, 집행당사자, 기타 집행참가 자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법적효력을 가지므로 일반법에 속하며 실체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수속법에 속한다.

실체법은 국가가 법률관계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이며 수속법은 국가가 법률관계당사자에게 부여해준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위한 법적인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

는 법이다.

민사집행법의 주요내용은 민사집행기관이 민사집행권을 행사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범이며 따라서 수속법의 범주에 속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 중재법 등과 함께 민사수속법에 속한다.

민사집행법은 또한 강행법규범에 속한다.

법규범은 그의 지시적성격에 따라 강행규범과 임의규범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국가에 의하여 보호하게 되는 권리와 리익, 그 효력이 다른데 따라 구분한것이다. 한마디로 강행규범은 개인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는 법이며 임의규범은 적용여부가 개인에 의하여 자체로 선택을 할수 있는 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기관이 국가강제력을 적용하여 효력이 발생한 판결문이나 재결문의 내용을 실현하는 활동과 그것으로 하여 형성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민사집행기관, 집행당사자, 기타 집행참가자의 의향이 어떻든간에 다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민사집행기관, 집행당사자, 기타 집행참가자는 그 의사에 따라 자체로 선택하거나 적용을 변경할수 없다. 때문에 법규범의 내용가운데 임의적인 규정이 있다고하여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민사집행법은 강행법규범이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그의 존재형식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의 존재형식은 바로 민사집행법의 편집방식에 의한 립법적형식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존재하고있는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절차를 민사소송절차의 련속과정으로 함께 규제한 법규범이며 민사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주체65(1976)년 1월 10일 채택)과 그밖의 법규범들에 규제되여있다.

민사소송법에서 판결, 판정의 집행은 마지막 한개장으로 되여있으며 판결, 판정집행 법에는 민사판결집행뿐아니라 형사판결집행에 대하여 함께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 현행의 민사집행법은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집행법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

지금 세계적범위에서 본다면 매개 나라와 지역의 법률전통이 다른것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은 주요하게 아래의 3가지 종류의 립법존재형식 즉 민사집행에 대하여서만 규제한단독립법과 민사집행과 민사소송(재판)절차를 함께 규제하거나 민사집행과 기타 절차들과같이 규제한 혼합립법이 있다.

민사집행법에는 민사집행단독립법의 형식이 있다.

민사집행단독립법은 바로 민사집행의 절차, 제도, 원칙, 방법 등을 단독적인 규범들로 제정하고 독립적이며 단행적인 민사집행법전을 제정하여 내놓은것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과 민사소송(재판)혼합립법의 형식으로 존재하고있다.

지금 세계의 절대다수 국가의 민사집행절차는 다 《민사소송법전》속에서 규정하고있 으며 이런 립법존재형식을 민사집행과 민사소송(재판)혼합립법이라고 부른다.

민사집행단독립법을 실시하고있는 나라들에서의 민사집행법전도 이전부터 독립되여 있은것이 아니다. 초기에 민사집행과 관련있는 규정도 민사소송법이나 기타 법률규범속에서 혼합되여있었으며 후에는 변화를 거쳐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이나 기타 법률규범에서부터 독립하여나왔다.

민사집행법에는 민사집행과 기타 절차혼합립법의 형식이 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민사집행의 절차에 대하여 단독립법이 없으며 또 민사소송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타 절차와 함께 혼합하여 립법을 진행하였다.

이런 립법형식은 다시 3가지로 구분되여있으며 파산절차와 혼합한 립법형식, 민사집 행절차를 분산하여 여러 법률속에서 규정하는것, 재판소법과 재판소규칙속에서 민사집행 절차를 규범한것이 있다.

우리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고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적극 담보하여야 하며 그 생활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도 록 집행법규범들을 더욱 개선완성하여야 할것이다.